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가단19 판결 [임차권존재확인 등]

전 문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1. 7. 8.

판결선고 2011. 7. 22

주 문

원고에게, 피고 B는 420,000원, 피고 C, D는 각 2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1. 11 부터 2011. 7.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E와 망 F 사이에 2009. 4. 10. 남양주시 G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1,500만 원, 피고 C, D는 각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동거하던 자이고, 피고 B는 1976. 7. 26.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이며, 피고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9. 4. 10. 피고 E와 사이에 남양주시 G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대차기간을 2011. 4. 9.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09. 10. 14.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같이 입주하여 살아 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점유한 채 살고 있었다.

라. 피고 B, C, D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2231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차권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망인의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문에서 정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같이 입주하여 살아 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과 갑 2, 3, 7,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는 900만 원, 피고 C, D에 대하여는 각 6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11호증의 2 내지 8,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2009. 10. 13. 09: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원고의 양 어깨를 길이 약 80cm의 곡괭이자루로 2회 때리고 이어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원고를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설골 골절 및 갑상연골골절(의증) 등 상해를 가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폭행 직후 자살을 시도하여 2009. 10. 14. 사망한 사실, 이에 피고 B, C, D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그 상속지분은 피고 B가 3/7, 피고 C, D가 각 2/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상해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망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폭행의 태양, 정도,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B, C, D는 망인의 위자료 채무를 그 상속지분별로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42만 원(=100만 원 X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는 각

28만 원(=100만 원 X 2/7)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1. 1. 11.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7. 22.까지 민법에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평소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망인이 갑작스럽게 이 사건 폭행을 저지른 것이고 망인의 위 폭행은 원고의 생명을 노린 위험성이 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2,1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실혼 관계에 기한 위자료 청구 부분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원고에게 이혼한 상태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망인과 혼인을 준비하고 공동생활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1,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는 600만 원, 피고 C, D에 대하여는 각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망인과 동거를 하면서 망인이 결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별거한지 약 20년이 되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미옥